

<2025년 의왕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> 안내

안녕하세요! 고객님.

미니태양광 설비·시공업체 솔라테라스(주)입니다.

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필요서류를 '등기우편'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필요서류 목록 - 첨부파일 PDF 확인>

- (1) 참여 신청서 1부
- (2)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사무소 동의서 1부
- (3) 정보제공 동의서 1부
- (4) 표준설치계약서 1부
- (5) 사업 안내 확인서 1부
- (6)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부
- (7) 전체 세대 소유자 동의서 1부
- (8) (임차)소유자 동의서 1부
- (9) 건축물대장 1부
- (10)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자) 1부

<필요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>

- (1) 기재가 어려운 부분은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.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고객님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.
- (2) 각 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<등기 우편 보내실 곳>

* 주소 : [10552]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-68, 2층 사무실 미니태양광 담당자 앞

* 받는사람 : 솔라테라스(주)

* 연락처 : ☎1566-3221

업체명	용량 (W)	형태	태양광 모듈 규격 (mm)	보급 가격(원)		
				총 설치비	보조금	자부담
솔라테라스(주)	445W	난간 거치형	1,762×1,134×30	950,000	760,000	190,000
		옥상 앵커형	1,762×1,134×30	1,000,000	800,000	200,000
	890W (445W x 2장)	난간 거치형	1,762×1,134×30	1,900,000	1,520,000	380,000
		옥상 앵커형	1,762×1,134×30	2,000,000	1,600,000	400,000

[붙임 1] [별지 제 1호 서식]

경기도.의왕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				
신 청 인			연락처	
시·군명		세부주소	(동 / 호수)	
주택형태	공동주택(), 단독주택()		설치용량	W
설치장소	난간(), 옥상(), 기타()		전월전기사용량	kWh
설치여건	방위각() 음영여부()		난간의 안정성	
설치기간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 (사업기간 : 일)			
설치제품	거치형 / 앵커형 / 콘솔형 W (참여기업명 :)			
설 치 비	총사업비	도 비 보조금	시·군비 보조금	자부담
	원	원	원	원
위와 같이 경기도 및 의왕시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 청 인 (인)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의왕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				
첨부서류 1. 건축물대장 1부(소유주 명시) 2.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사무소 동의서 1부 (해당 시) [별지 제1-1호 서식] 3. 정보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제1-2호 서식] 4.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1부 [별지 제1-3호 서식] 5. 사업 안내 확인서 1부 [별지 제1-4호 서식] 6.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사항 확인서 1부 [별지 제1-5호 서식] 7.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자) 1부 8. (다세대 . 연립주택)소유주 동의서 1부(해당 시) [별지 제1-6호 서식] 9. (임차인) 소유주 동의서 1부(해당 시) [별지 제1-7호 서식]				

동 의 서

- ☐ 공동주택명 : ☐ 연락처 :
☐ 신 청 인 : ☐ 연락처 :
☐ 세 부 주 소 : (동 / 호수)
☐ 참여기업명 :

『~~공동주택관리법~~ 시행령 제19조(관리규약의 준칙) 제2항의 5호』 및 『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의 4호』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「2025년 경기도(의왕시)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」 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.

2025. . .

(공동주택명) 관리소장 (인)

경기도·의왕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정보제공 동의서

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,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항목 】

- 수집항목 : 성명, 연락처, 주소, 전월전기사용량(kWh), 계좌번호, 예금주, 생년월일, 전자메일, 설비설치 현황 및 설치 사진

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】

- 성명, 연락처, 주소, 전월전기사용량(kWh), 생년월일, 전자메일, 설비설치 현황 및 설치 사진
 - 보조금 지원 기준 적합·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목적
 - 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목적
 -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원활한 운영 목적
 -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·통계자료에 활용 목적
 - 설비 운영 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 활용 목적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상황(호우 태풍 등) 관련 안내 문자 통보 목적
- 계좌번호, 예금주
 - 보조금 지급 목적

【 개인정보 보유기간 】

- 보존기간 : 5년
- 보존사유 : 소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보존 필요

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】

- 정보 주체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에는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.

☐ 동의하지 않음.

2025. . .

신청인(동의인)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·의왕시장 귀하

[별지 제 1-3호 서식]

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
계 약 당사자	신청인	생년월일						
		주 소						
		연 락 처			E-MAIL			
	시공 업체	대표자				사업자등록번호		
		주 소						
		연 락 처			E-MAIL			
계 약 내 용	분 야	미니태양광		설비타입			설치용량	W
	설치장소				도 지원금	일금 원		
	설치기간	2025년 월 일 ~ 2025년 월 일			시·군지원금	일금 원		
	사업비 총액	일금 원			신청인자부담	일금 원		
	계약금	일금 원						
본 문 조 항	제1조 (계약금) 필요한 경우 “신청인”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제2조 (신청인 부담비용) ① “신청인”은 “참여기업”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, “참여기업”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② “참여기업”은 “신청인”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, “신청인”은 “참여기업”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·제출에 적극 협조한다. 제3조 (계약의 해약) ① “신청인”과 “참여기업”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② “신청인”과 “참여기업”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1.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.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“참여기업”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“신청인”에게 즉시 반환한다. 제4조 (보관)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신청인”, “참여기업”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							
특 약 조 항	제1조 (이행보증 및 하자보증)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“참여기업”은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. ② “신청인”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, “참여기업”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제2조 (사용자 교육) “참여기업”은 “신청인”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제3조 (지체상금율) “참여기업”이 “신청인”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제4조 (계약효력) 본 계약서는 경기도 및 의왕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.							
2025년 월 일 (신청자명) (참여기업) (인) (인)								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안내 확인서

의왕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(신청자, 참여기업)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(확인 후 ☑)

확인사항	참여 기업	신청자
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☐	☐
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	☐	☐
구조물 및 제품의 A/S 주체는 참여기업으로 신청자는 무상 수리 보증기간을 확인해야하며(하자보증서 수령), 보증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	☐	☐
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·조망권 분쟁,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왕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,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☐	☐
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사공기준을 확인 하여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과 위치의 적정성 및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☐	☐
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(문서 위조 등)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, 보조금 환수,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☐	☐
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지원 기간 내에 지원 신청 및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 미 접수 시 지원 신청이 취소됨 을 알려드립니다.	☐	☐
의왕시 공고문, 설치계약서 등 모든 제출서류 및 설치관련 절차서, 일정 등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안내 받고 확인하였습니다.	☐	☐

2025년 월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참여기업 : (인)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 참여기업 : (인)

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

-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의왕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및 의왕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.
 -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.
-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.
-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-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관련법,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.
 - 단,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,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.

경기도 의왕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(신청인, 참여업체)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신 청 인

(인)

참여기업

솔라테라스



[별지 제 1-6호 서식]

(다세대·연립주택) 소유자 동의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	(호)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참여업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‘2025년 경기도(의왕시)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’에 따라 해당 건물 옥상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(앵커형/콘솔형)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옥상 설치로 인해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모든 분쟁 등에 대하여 경기도 및 의왕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, 책임이 없으므로, 당사자 간 상호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확인합니다. 2025. . . <table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tr><td>호</td><td>소유자</td><td>:</td><td>(서명 또는 인)</td></tr></table> ※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공동소유일 경우, 공동소유자 모두 작성			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호	소유자	: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임차) 소유자 동의서			
신 청 인		생년월일	
설치장소			
참여업체			
임차인이 ‘경기도 의왕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’에 따라 본인 소유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하며, 이로 인해 소유자 ·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에 대하여 의왕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, 당사자 간 상호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확인합니다. 2025. . . 소유자 : (서명 또는 인)			